

환경형법의 일반적 고찰

이 태 언

<목 차>

- I. 서론
- II. 특성과 대상
- III. 환경법의 목적 및 내용
- IV. 환경범죄의 현황과 대책
- V. 국제 환경범죄

I. 서론

1. 의의

환경범죄란 우리의 생활관계에 있어 활동의 무대가 되는 인간생활에 있어 직,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기본적인 여건들을 해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인간의 생활이나 활동의 무대로서 끊임없이 접촉해야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땅과 물과 공기 등이다. 환경범죄는 인간 생활의 자연적 바탕을 악화시키는 범죄로 주로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종 제조업체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물과 흙과 공기를 더럽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 부산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가정에서 폐수들을 무의식적으로 방류함으로써 우리의 여건을 악화시키는 일종의 생활범죄로 볼 수 있는데 생활 중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그리고 특정한 피해자가 없기에 문제 삼는 경우가 적지만 환경법의 성격상 그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가고 피해 내용은 자연재해로 나타나 견잡을 수 없게 된다.

쾌적한 생활여건은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활기찬 근로와 활동을 통해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요소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형법에 환경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환경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법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를 삼고 있다. 헌법에서는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규정을 통해 국민들은 환경범죄의 사회적 유해성과 범죄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환경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확일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S. A Cain은 “환경은 자극을 주는 방향과 그 정도에 따라 변화를 수반하고 그 속에서 생물이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사물로 구성되어 있는 총체적인 것”이라고 했고 Lynion K. Caidwell은 환경은 넓은 의미로는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의 실체”라고 하며 좁은 의미로는 “어떠한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유형, 무형의 객체”라고 했다. UN환경계획기구 (UNEP)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인간환경으로 나누면서 자연환경은 대기, 대양, 물, 암석권, 육상생태계로 구성되고, 인간환경은 인구, 주거, 건강, 생물계, 산업, 에너지, 운송, 관광, 환경교육 및 홍보, 평화와 안전이라고 하였다. 어쨌든 환경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문명의 역사는 자연환경 개발의 역사이며 인류생존을 위해 개발 또는 이용대상으로서의 자연자원을 유효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는데 이렇게 볼 때 자연환경은 생명체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환경범죄는 이와 같은 생명의 근원인 환경을 파괴하는 법률행위인 것이다.

II. 특성과 대상

1. 특성

환경범죄는 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기업범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 환경범의 특성은 대체로 ① 간접성이다. 물고기, 대지 등 환경인자를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결과 발생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원인 행위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② 전파성이다. 환경인자의 특수성 때문에 1회의 침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광범위한 지역에 퍼지게 된다. ③ 완만성, 복합성이다. 환경범죄는 그 결과가 서서히 일어남으로 원인규명이 쉽지 않고 여러 간접요인들이 결합되기 때문에 또한 원인규명이 쉽지 않다. ④ 상규성이다. 환경범죄는 일상적 사회활동이나 기업활동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금지착오적 입장에서 불법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고 있다. ⑤ 행위자의 다수성이다. 환경범죄는 주로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축산업자, 가정의 생활오수, 심지어 우리의 관습에 따른 자연훼손적 행위들이 모두 환경범죄의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침해의 복합성 때문에 주체 확정이 힘들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철차도 어렵다. ⑥ 침해가 영구적이고 규율대상에 있어 과학성, 기술성이 필요하다. 환경범죄의 내용을 확정하는 데는 수사관의 행위가 아니라 과학자적 지식에 의해 판별되는 것이므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등의 특수성이 있다.

형법에서는 환경범죄의 내용을 단순히 음료수에 대한 것과 아편에 관한 두 경우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음료수에 대한 범죄로는 음료수의 오물혼입죄(§192 ①), 독물혼입죄(§192 ②) 그리고 음용수가 수도에 의한 경우는 그 대중성 때문에 가중하고 있다.(§193) 음용수에 독물을 넣어 차사상의 결과를 일으킨 경우(§194)도 별하고 있다. 형법 외에 특별형법 형태의 중요한 법으로는 수도법 제 3조, 1. 3호, 환경범죄처벌법 제1조 14호,

4 比較法學 (第18輯)

환경보전법 제66조 1, 3호,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 방지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관리법, 원자력법 등이 있다.

환경범죄는 환경에 따라 환경파괴와 환경오염 등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침해를 대상으로 하는데 성격상 국제적일 수밖에 없다. 소규모적인 환경파괴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정력(self purification)에 의해 소화(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화 되지 않았으나 인구급증과 무절제한 생산력 확대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환경오염은 자연의 정화능력을 훨씬 초과하여 오염이 자연 속에 누적되어 결국 생태계의 질서를 파괴할 수밖에 없어 인간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됨으로 이를 방지 할 수 없는 것이다.

2. 대상

환경범죄의 전제는 환경의 침해로서의 오염이나 파괴인데 파괴의 경우는 그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다. 원천적으로는 환경은 오염침해의 문제이지 파괴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행위로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침해로서의 오염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조치로는 1273년에 영국이 석탄의 사용 삭감을 명하는 칙령을 발표한 것이 처음인데 산업혁명이 보편화되어진 19세기 이래 세계 각국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규제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게 되었다. 오늘날 세계적이나 국내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환경침해사례는 양적으로 끊임없이 확대되어 갈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보편화되었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복잡화되어 피해는 이제 인류의 생존이나 생활환경을 직접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 되었다. 인류가 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로마클럽¹⁾이 지

1) 1968년에 발족한 조직으로 인류미래에 관한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에서 인구증가, 농업생산, 자연자원, 산업생산, 환경오염 등은 성장의 요소이나 한계가 필요하다고

적한 대로 ① 환경오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오염증가곡선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② 환경오염에 대한 제어조치의 필요성을 과소평가 한다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회복불능의 상태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③ 오염인자는 지구전체에 널리 있어 환경오염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국제적인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UN에서는 19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제1회 인간환경회의(The stockholm conference on Human)를 개최하여 환경문제를 세계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단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임을 선언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환경의 문제는 성장의 부수비용(Nebenkosten des Wachstums)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라는 인식전환의 바탕 위에서 훨씬 강력한 국제적 규제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1년 5.16혁명 이후 정부의 경제 성장 일변도의 강력한 성장정책으로 환경오염 다발적 기업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되어지면서 70년대 중반 이후 중화학 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과정에 환경오염 내지 파괴의 요인이 급격하게 생성되었는데도 수출을 위한 경제성장만을 고집한 나머지 적절한 환경대책을 병행하지 않아 환경보호 정책의 기회를 놓쳤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 최소의 환경관계법은 汚物清掃法²⁾이지만 일제시대의 汚物掃除令을 대치한 것으로 오물처리에 관한 법이어서 정확한 의미의 환경법은 아니고 1963년 11월 5일에 제정된 공해방지법³⁾이 최초라고 할 것이다. 환경에 관한 입법은 ① 1963년의 공해방지법, ② 70년대의 환경보전법, ③ 80년대 헌법에 환경권 신설, ④ 90년대 초의 복수환경법주의 ⑤ 90년대 이후의

보고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의 한계나 가채연수 그리고 성장의 한계 모형을 제시했다

- 2) 이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것인데 쓰레기 분뇨의 수거나 처리를 행정관청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은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이어서 은밀한 의미에 있어서는 환경법으로 보기에 어렵다.
- 3) 이 법은 1977년 12월 31일에 환경보전법으로 대체되었고 다시 1990년 8월에는 이 법이 폐지되고 환경정책 기본법과 기타 개별입법으로 발전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환경자치시대로 확산되었다. 환경범죄는 환경에 관한 질서를 규정한 환경법의 내용(국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환경법의 내용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III. 환경법의 목적 및 내용

1. 환경법의 의의

환경법은 사람과 그 주변에 관한 법 또는 환경의 이용, 관리, 보전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1) 환경법은 환경에 관한 법이다.

환경법의 보호대상은 환경인데 환경은 크게 볼 때 자연환경과 사회적 생활환경으로 나눌 수 있으나 본법의 대상은 자연적 또는 물리적 인공환경⁴⁾ 그 중에서도 자연환경이다. 그러나 좁게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3조 1항 규정에 의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연환경은 지하, 지표(해양포함),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생태계)를 말하며(동법 제3조 2항)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동법 제3조 3항)

2) 환경법은 환경의 보전에 관한 법이다.

환경법은 환경을 효율성 있게 보존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관리, 이용, 규제를 규정한 법인데 환경오염이나 훼손, 그리고 파괴를 규제함은 물론 환경을 남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환경을 합리적으로 이용, 관리함을 목

4) 물리적 인공환경이란 사회생활에 있어 필요한 도로 공원 교량 나아가서 교육의료시설 전기, 가스, 하수도 등 인공적으로 조성한 환경을 말한다.

적으로 한다. 과거에 공해법은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함에 불과하였으나 환경정책 기본법은 소극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뿐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원 개발적인 면이 강조되어 공공토지 자원, 일반토지 자원, 자연 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이의 구체적인 내용인 공원, 도로, 댐, 주택, 개간, 농지개량, 수리, 수력발전 등을 포함한다. 환경의 이용과 개발은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는 환경법의 기본 원칙이다.⁵⁾

3) 환경법은 환경권을 지도원리로 한다.

과거의 공해관련법이 환경법으로 확대 개편된 것은 헌법 33조가 규정하는 환경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환경권은 포괄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환경권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아무리 환경법이 법적으로 치밀한 구조를 가졌다 해도 환경은 국민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보편성에 입각하지 않으면 법적 규정만으로는 환경권을 구현 할 수가 없다.

4) 환경법은 동시에 환경오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환경문제는 결국 환경의 오염이나 파괴로 인한 문제, 즉 환경오염 원인을 일으킨 사람과 피해자간에 피해의 구제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초가 된다. 이와 같은 환경분쟁은 관계 행정권의 환경행정에 대한 항고소송이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내지 피해원인 행위에 대한 유지(留止)청구가 대부분으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환경피해 분쟁조정에 있어 단체소송 및 환경피해에 있어서의 인용의 한계 등 다른 범죄와는 특수성이 있는데 환경 소송은 운영에 있어 유연성이 필요하다.

2. 환경법의 목적

환경법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법으로 환경정책 기본법 제 1조는 “이

5) 환경법의 기본내용은 환경의 관리, 이용, 규제에 있다.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법의 제정 목적을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법 제정 목적은 ①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이 된 환경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생활에 있어 쾌적한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②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오염이나 훼손으로부터 예방하고 적절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고, ③ 중구적으로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음으로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을 보전하는데 있다.

3. 환경법의 특수성

환경법은 내용의 특성상 ① 환경의 보전을 위한 규제적 작용은 행정법의 영역에 속하고, ② 환경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사특별법적인 것이고, ③ 환경침해자에 대한 제재는 형사특별법적인 것이어서 공법과 사법의 범역에 걸쳐 있으므로 법학에 있어 각 학문적 성격을 가진다. 환경법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技術性, 科學性

환경법은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이용, 규제함을 통해 인간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법이기 때문에 환경법의 내용이나 운용의 합리화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운용에 있어 테크닉(기술성)뿐 아니고 오염발생 등을 측정하여 규제하는 과정에서도 기술적 방법의 고도화가 요청된다. 기술성이나 과학성은 유사한 표현인데 환경법의 규정도 과학과 기술을 전제로 해야 하고 운용에도 일반적 방법이 아니라 이 분야의 전문

적, 기술적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야 하며 특히 환경침해에 대한 판단은 기술성에 입각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환경법은 환경기술의 수준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이 분야의 전문적, 기술적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야 하며 특히 환경침해에 대한 판단은 기술성에 입각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환경법은 환경기술의 수준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이 분야에 대한 고도의 과학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

2) 적용에 있어 지역적 차등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오염이나 파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것도 환경범죄의 특성이다. 또 환경에 대한 규제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공원지역, 생태보전지역 등에 따라 규제의 정도와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 지역성이 강조된다.

3) 국제적 성격

환경의 문제는 한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기나 해양 등의 오염은 국경이 있을 수 없다. 이 때문에 환경문제로 인해 국가 간의 다툼이 많은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에 공동해결을 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오염은 거의 50%가 중국의 영향이라는 보고도 있다. 그리고 제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적 유해요소들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진국은 환경파괴를 감수하면서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 60년대 일본의 공해공장들이 우리나라 등지에 대거 이동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오존파괴로 인한 지구 자연환경의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바 오존층 파괴가 이산화탄소의 대량발생으로 인함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공해 발생적 제품을 규제하기 위해 환경에 관한 국제적 협약으로서의 소위 그린라운드 체제는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킴으로서 국제적인 환경기준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느 법역보다 환경법의 세계화가 가장 용이 한 것 같아 보인다.

4) 종합법적 성격이다.

환경법은 독자적인 법역이기는 하나 성격상 종합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종래의 공사법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환경에 대한 각종 규제법은 그 제정 목적에 따라 공법인 행정법, 형법, 헌법적인 것과 사법으로서 민사적 특별법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법학, 행정학, 공학, 의학, 자연과학 등 각 학문들이 집합되기도 한다.

우리의 경우 중요 환경관계법 만해도 환경권을 규정한 헌법 외에 환경관계 각종 행정법, 환경관계 특별형법, 환경규제와 책임에 관한 환경사법이나 소송법은 환경피해에 관한 사후적 권리구제에 관한 성격이고, 환경국제법은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롯한 각종 조약들을 내용으로 한다. 환경법은 헌법적 기본 질서하에서 공법으로서의 강제성과 사법으로서의 비권력적 성격이 공존한다.

3. 환경형법의 특성

환경보존을 위한 가장 실효적이자 마지막 보루가 환경형법이다. 헌법을 비롯하여 행정법이나 민사법 등에서는 환경의 이용이나 파괴로 인한 비권력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법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규제가 어려울 수가 있다. 환경행정법적 규제사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형법적 방침이 필요한 것이다. 환경법상 특정의무 위반행위는 형벌을 과함에도 이를 형사범으로 보지 않고 행정범으로 보지만 내용적으로는 형사범을 위해 형법과 행정법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입장에 있는 것은 ① 환경에 관한 기본법은 법의 성격으로는 행정법이지만 행정적인 통제만으로는 효율적인 규제가 이루

어 질 수가 없고, ② 그러나 환경관계 사범은 형법의 전형적인 범죄이론으로서 특수성, 전문성이 많기 때문에 순전한 형법적 이론으로는 규제할 수가 없어 환경형법과 행정법은 협력할 수밖에 없다. 환경형법과 행정법이 공존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환경법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사범을 형법적 이론에 의해 규제하는 방법이다. 결국 환경행정적인 목적과는 관계없이 형법고유의 불법유형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음용수관계 범죄나 아편관계 범죄, 그리고 환경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1991. 5. 31)적 범죄의 구체적 위험범만 처벌할 것이나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1995년 국회에 상정되었던 형법개정 시안 제 26장은 공중보건에 관한 죄라고 하여 기존 형법상의 환경적 범죄를 크게 확장하여 보건 내지 환경범죄로 하여 광범위하게 형사 처벌토록 하였다. 이 시안은 국회통과 과정에서 후일을 기약하고 현행법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2) 행정목적 달성하기 위한 형벌법규 형태가 있는데 이는 배출기준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그 위반에 대해 추상적 위험범이나 형식범의 형태로 기수조건을 정함으로써 환경범죄를 형사입법보다는 광범위하게 처벌하려는 태도이다. 형태는 형법이나 성격은 행정법적인 것으로 일종의 행정 종속적 형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류의 법제는 내용적으로는 행정법적 특수성에 입각하여 입법되었으나 법의 마지막 장에서 처벌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처벌도 환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지만 처벌이 행정명력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환경입법이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개별적인 환경재의 보호나 건강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유형이 있다. 즉 형법고유의 불법유형에 따른 구성요건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면서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백지형법과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경우이다. 이 같은 형태는 앞의 두 입장의 절충적인 경우인데 상대적, 행

정중속적 형법으로 볼 수 있다. 허가 없는 환경오염이나 행정법적 의문에 위반한 환경오염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경우인데 폐기물 관리법 제 7조나 수질환경보전법 제 29조⁶⁾와 같은 형태이나 우리입법에서는 흔하지 않다.

4. 환경법의 기본원리

환경법의 기본원리는 무엇인가? 환경법 자체가 공사법에 걸쳐있기 때문에 기본적 원리를 도출하는 문제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나 헌법에 규정된 환경권의 입법정신과 환경법의 기본적 바탕으로 볼 수 있는 환경정책 기본법의 입법취지 내지 구조를 통해 추출하는 것이 좋다. 무릇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환경의 보존, 관리, 이용을 위한 방안은 정책적인 방향만 제시해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의 내용의 실천을 담보할 강력한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환경법의 기본 원리들로는 ① 사전배려의 원칙, ② 존속 보존의 원칙, ③ 원인자 책임의 원칙, ④ 협동의 원칙, ⑤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 등 5가지를 들 수 있다.

1) 사전배려(事前配慮)의 원칙

환경은 특성상 한번 파괴되거나 오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 복구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므로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어느 법역에서 보다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다. 사전배려의 원칙이란 미래적 예측적으로 행정적인, 계획적인 조치들을 통해 행위 주체들이 환경보존에 적합하게 행동하고 구체적 결정을 함에 있어 환경영향을 고려하도록 하여 생태계의 기초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⁷⁾이다. 이는 안전확보의 관점에서 환경위험에

6) 수질환경보전법 제 29조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형식인데 이 중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표현이 백지 형법적 입법이다.

7) 김동희, 행정법II(박영사 : 1998), 421면. 천병태, 김병길, 환경법론(삼영사 : 1997), 42면

대비한 사전 배려와 자원관리의 관점에서 환경자원의 관리 보존을 위한 사전배려를 포함한다. 환경법은 이미 발생된 환경파괴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하게 되어 있는 환경오염이나 자연훼손을 방지하는 것보다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환경 보호적 입장에서 사회생활을 조정, 규제함으로써 계획법적 성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환경의 질적 향상과 보전, 환경이용에 있어 환경 보전의 우선적 고려(기본법 제 23조) ②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환경보전 계획의 수립, 시행의무(동법 제 4 조) ③ 환경오염 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동법 제7조) ④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 위해의 예방(동법 제11조 1항 3호) ⑤ 환경영향의 평가 및 사후관리(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⑥ 수질환경보전 법 제1조(목적규정) 등이다. 판례를 통한 법원의 입장은 명백한 사전 배려적 입장에서의 판례는 없으나 환경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후 구체적인 측면, 피해 결과적인 측면 보다는 장래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존속보장의 원리

존속보장의 원칙이란 환경보호의 목표를 현상의 유지보호에 둔다는 것으로 악화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소극적인 현상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상태의 악화를 금지함으로써 보호적인 환경관리나 자원배분을 하게 함으로 사전배려의 원칙에서 보다 더 엄격하게 환경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환경기본법 제25조는 ①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②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하며, ③ 야생물, 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은 보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들이다. 사전배려원칙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훼손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존속보장의 원칙은

이러한 여지를 봉쇄하고 있다.

3) 원인자책임원칙

원인자 책임원칙이란 자기나 자기 영향권에 있는 자의 행위나 물건, 시설 등으로 인해 환경침해가 이루어 졌을 때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으로 형법에 있어 책임주의와 같은 이론이다. 이 원칙은 현실적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과 동시에 훼손된 침해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을 져야 함을 말한다. 그러나 원인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고 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를 확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① 생활관계에서 장소적으로 오염물질을 방출한 자를 원인자라 보는 견해(형식적생활관계설), ② 사실상의 생활 범위 내에서 오염을 발생하는 자가 원인자라는 견해(사실상의 지배영역설 : 자기생활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오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③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고 오염을 제거, 방지, 전보(塡補)함에 가장 적합한 입장에 있는 자가 원인자라고 하는 정책대상으로서의 보는 것(참여설)인데 이 입장에서는 생산자 뿐 아니라 소비자도 책임을 져야 하게 된다. 환경기본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은 사실상의 지배영역설을, 폐기물 관리법은 참여설을 취하는 것 같은데 대법원의 최초 판례도 참여설적 입장에서 원인자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경향이다.

4) 협력의 원칙

협동(력)의 원칙이란 환경보전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국민, 사업자등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인데 환경의 보전은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지켜질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결국 협동의 원칙은 환경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참여를 전제로 정보를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개방적인 여건이 조성되어야 국민적 참여가 가능하다. 협동은 법적으로 절차나 권한이 규정된 제도

적인 협동과 법률 집행과의 관계에서 또는 일방적 고전적 규율을 대체하는 협동과 같은 비제도적 협동이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도적 협동이 아니고 비제도적 협동이 문제되는데 협동의 수요, 환경정책상의 규율의 인수, 법적 불안정서의 제거, 실용성, 유연성, 법적 쟁송의 회피, 행정의 간소화, 신속한 효과의 발생 등,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다.⁸⁾ 협동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적 의무일 뿐 아니라 환경기본법의 여러 규정 즉 국가의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책무(동법 4조 1항), 정부의 중요환경 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의무 (§8조 1항)등 환경관계법 전반에 걸쳐 협동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5)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이란 개발을 함에 있어 환경보전을 유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개발, 즉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나 고갈시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개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원칙이 대두된 것은 지구의 자정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절제한 개발이 계속되면 생태계가 파손되어 인간을 비롯한 생물의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는 입장에서 나온 원칙인데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작성하여 제출한 브룬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에서 사용된 것이 1992년 리우선언과 21세기 행동강령(Agenda 21)에서 공식 채택된 원리이다. 이 원칙은 환경보전과 자연자원의 보전을 세대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환경개발은 우리세대 뿐 아니라 후세대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8) 김창규, 환경법상 협동원칙에 대한 소고(배준상교수 정년 논문집 : 1997), 640면

5. 환경법의 지도원리

1) 의의

환경법의 지도원리는 환경권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인간을 비롯한 생물들은 생존자체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환경권의 문제는 주로 산업혁명 후 급진적인 공업화로 인한 공해문제, 소득증대로 인한 여가활동의 문제 등과 맞물려 대두되었다. 인류역사는 초기에는 환경과 싸우면서 생존의 바탕을 마련하였고 그 이후에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활용하면서 생활하였으나 적어도 산업혁명이후는 자연을 지배하며 무자비한 개발을 통한 훼손이 이루어져 오늘날 각국은 새삼스레 환경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고 환경문제는 한나라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권⁹⁾은 환경이 주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적으로는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쾌적한 환경과 자연현상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환경침해로 재산과 인신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포함한다. 환경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누리는 권리로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환경권은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환경권의 인정은 국가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의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를 가지는 것인데 국민은 국가에 대해 이 같은 의무를 촉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권의 법리가 환경법의 지도이념이 됨으로 환경권은 환경법이 독자적 법역을 갖게 하는 근거가 된다.

9) 환경권의 개념은 1960년대 후반 미시건 대학의 J. L. Sax 교수에 의해 제기된 이후 영미 법상의 전통적인 불법방해 법리의 하나로 이해되었다.

2) 환경권의 법적 성격

(1) 기본적 자유권적 기본권설

헌법에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된 환경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헌법 제 35조는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권은 불결한 환경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데 국민은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환경이 침해되어 이로서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이의 배제 및 예방을 요구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리를 말한다. 국민은 환경권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자에게 환경권 침해의 방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환경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입장에서 선언적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환경침해 배제 청구권이 있고 나아가서 환경개선보전 청구권도 있다.

(2) 生存權的 基本權

환경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쾌적한 생활여건으로서의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환경권의 보장 없이는 생존권 자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것으로 보지만 환경권을 추상적 선언적인 것으로 보게 된다.

(3) 兩面的 基本權設

환경권은 인격권으로서의 자유권적 성격이 있고, 동시에 생존권적 기본권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자유권적인 성격으로부터 환경침해 배제 청구권이 인정되고 생존권적 성격으로부터 환경보호 보장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4) 複合的·社會的 기본권설

환경권을 사회적 기본권과 인격권의 복합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즉 환경권은 본질적으로 환경파괴의 예방, 정지, 회복, 개선 등 환경보호와 개선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회권이면서 자유권적 성격과 청구권적 성격을 모두 가진 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에 소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 외에도 환경권을 자유권, 청구권, 생활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의 종합적 성격을 가진 다는 종합적 기본권설이 있다. 환경오염의 예방 또는 배제를 요구하는 의미에서는 請求權的인 것이고 오염된 불결한 환경은 인간다운 생활을 저해한다는 면에서 生活權인 것이고, 오염된 불결한 환경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된다.

6. 환경권의 내용

환경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 규정되었으나 일반적으로는 쾌적한 자연환경, 일조권, 조망 및 경관권, 환경오염, 환경파괴 등의 경우 이의 배제를 청구하는 환경침해 배제청구권, 쾌적한 주거생활권,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청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청구권 등으로 볼 수 있다.

1) 쾌적한 자연환경권

국민은 생활관계에 있어 깨끗하고 맑은 대기나 물·토양적 환경에서 살아가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와 같은 자연환경, 살기에 쾌적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법으로는 자연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규제 폐기물, 유해화학물, 먹는 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2) 일조권 조망, 경관권

일조권은 직사광선을 받을 수 있는 관련이익을 말하는 데 태양빛을 침해당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은 환경의 혜택(이익)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의 하나이다. 주위의 건조물에 의해 일조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판례는 일조권이 사법상의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 같으나¹⁰⁾이의 지속적인 침해는 재산권이 나 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어 환경권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¹¹⁾ 즉 일조권의 방해는 인간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토지나 가옥의 가격 폭락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¹²⁾ 조망 경관권은 자연경관을 방해나 훼손 없이 감상할 수 있는 권리로 고층건물 등으로 조망권이 침해된 경우를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의 내용이 된다고 한다.¹³⁾

3) 환경침해 예방 및 배제청구권

국민은 환경을 저해하는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과 유지(留止)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기업이 각종 공사를 함에 있어 환경파괴나 환경오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유권적 기본권에 환경영향평가, 환경파괴행위 규제와 같은 예방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침해 예방 청구권과 환경침해배제 청구권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권리는 공공복리와 침해로 인한 개인적 손해와 비교하여 공공복리나 공익이 강할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 있어 수인해야할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환경권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볼 수 있는 한 환경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의 우

10) 대판 95.9.15, 95다 23378. 대판 97.7.22 96다 56153
 11) 박윤직, 물권법(박영사 : 1993), 302면
 조은래, 환경법, 104면
 12) 조은래, 104면
 13) 대판 95.9.15, 96다23378

려가 있는 경우는 원인자에게 위법성이 인정됨으로 인용의 한도나 관계없이 환경침해 예방이나 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¹⁴⁾ 수인의 한계나 배제의 정도는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 할 것이다.

4) 쾌적한 주거생활권

헌법 제 35조 제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적 환경권의 침해는 주로 주거과정에 있어 야기되기 쉽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신축의 경우 기존 주택과의 관계에 있어 환경권 침해 문제가 환경문제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청구권적 기본권임과 동시에 국가는 소극적으로 국민의 주거환경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보장 받을 소극적 권리가 있다. 이는 ① 쾌적한 주거를 개발하고 공급할 주택정책의 수립, ② 쾌적한 환경의 요구, ③ 양질의 주택에서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내포한다.

5) 생활환경 조성 청구권

국민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급부적 입장에서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전, 개선, 조성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환경의 조성, 관리는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일반 국민간의 평등권을 고려해야 한다.

IV. 환경범죄의 현황과 대책

1. 국제환경형법의 의의 및 필요성

20세기를 통해 공해로 인한 지구환경의 악화가 가속화되어 1980년대

14) 최상호, 환경권, 83면

이후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구 공통의 과제로 등장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무기생산을 중심한 중공업 그리고 국제거래의 활성화로 인한 제조업의 육성으로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공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대기나 해양 토양오염에서 시작하여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로 신음하게 되었고, 이의 결과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들의 속출로 지구의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지구적인 거시적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어느 나라나간에 경쟁적으로 우선의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무제한적 개발을 하다보니 결국 자신의 뒷에 걸린 셈이 되어 1960년대 이후에는 UN차원에서 지구환경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법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파괴사범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책은 형사적 제재이기 때문에 국제환경형법의 정립이 논의 되게 되었다. 물론 환경사범의 경우에도 국제사법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겠지만 형의 집행에 있어 구속력 있는 집행방법이 마땅찮아 환경사범은 무역이나 경제적·외교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실이 이렇다 하더라도 환경사범도 형사범인 것이 틀림이 없으니 형법적인 논리로서 이들에 대응할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일로 국제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진척이 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국제환경형법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소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2.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국제형법적 노력

1980년대 이후에 환경오염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절박한 인식이 대두되면서 각국은 국내 형법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범죄를 확대해 가는 한편 환경사범도 범죄의 하나임을 주지시켜 나가고 있다. 환경사범의 고의성은 살인 등과 같은 전통범죄에 비해 미약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 결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법정형이 살인, 상해 등 전통적 중 범죄

와 대등하게 중벌에 처하게 되어있다. 환경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적 제재와 함께 형법적 제재가 병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 환경범죄의 규제에 있어 국내 형법과 국제법이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가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① 환경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국경이 없는 것으로 한 사안이 여러 나라의 관할에 속할 경우들이 많은데 이를 위해서도 각국의 형법은 국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② 국제법상 규정된 국제범죄를 개인이 범한 경우에 대해 이를 국내형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입법을 해야할 것이지만 국제법상으로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 환경 관계 범죄는 국제법적 범죄일 수가 많은데 국제법에서(국제형법) 이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벌할 방안이 확립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제간의 사건·사고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형사처벌 포함)을 규정한 국제 형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최근에는 환경 외에도 해상활동의 빈번으로 인한 각국간의 선박충돌 등 해난 사고와 국제성 범죄들이 점점 많아져 가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대응할 국가간의 협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국제환경법은 실질적인 국제환경형법이 되어야 하는데 ① 전 세계적인 초국가적 형법, ② 인접국가간의 국제형법, ③ 국내형법이지만 외국과 관련된 사례를 다루는 형법 적용법으로서의 국제형법의 형태로 하는 등 3단계로 나누어 점점 초국가적 국제형법의 제정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가 하나의 형법적 체도를 갖게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국내 형법에서 외국관련 국제성 범죄에 대한 장이나 각 범죄마다 외국간의 범죄에 대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장래적으로 지구는 경제적인 문제나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개별국가적인 방식보다는 국제간의 협력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EU의 경우가 대표적이거나 이와 유사한 지역간의 공동체적 형태가 아프리카나 중남미, 서남,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인접국간에 인위적인 국경이 문

제가 아니고 자연적 형태를 공유하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삶의 목적이 개인의 편안이라면 국가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한 국가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통합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것이다.

3. 국제 환경범죄를 위한 노력

국제 환경조약에 형벌을 두어 그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1962년 UN기관인 UNESCO가 “경관과 부지의 미와 특성의 보호와 관련된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최초로 형법적인 처벌을 통한 국제환경보호의 계기가 되었다. 1978년에는 자연과 자연자원의 보전을 위한 국제동맹(IUCN) 총회에서 각국의 정부간에 해양협회 조직체들의 논의를 통해 기름유출로 해양오염을 일으켰을 경우 이를 증벌해야 한다는 규정을 하게 된 이후 국제간에 환경사범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의 예들이 크게 증가되었다.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환경국제법의 제정, 나아가서는 환경국제형법의 제정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으나 국가간의 이해가 얽혀 있어 단일한 법제정은 어렵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접근해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① 사안별·단편적 접근방법(Piecemeal approach)에서 점차 포괄적 방법으로 나가는 것으로 사안별·단편적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북동(北東) 대서양 해양환경보전협약(1992)이다. 이는 대서양 연안국들이 대서양에서의 핵물질 폐기의 완전금지, 중독성 물질의 폐기의 억제 등 해양오염의 중대한 요인들을 규제하는 것으로 내용별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사안들을 각국의 협의로 점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② 원칙협약 - 추수의 정서 접근방식(frame work convention / protocol approach)으로 이는 국가간 협약에서는 원칙적인 문제만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 추가적인 사안들은 의정서를 통해 하나씩 풀어가는 연성법적 규제의 방식인데 가장 선호되고 있다. 왜냐하면 각국간에는 환경적인

특수분야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가 되어진 상태에서 과학정보의 입수나 정치적 조건의 변화와 같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의정서를 통해 보완해 감으로써 새로운 조약을 위한 준비없이도 의정서나 부속서의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분야에 있어 각국은 탄력성을 가진 유연한 형태의 우산협약이 국가간 협력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어 대부분의 국제협약이 이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연성법(軟性法)은 구속력 없는 규범에 불과해서 각국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을 때는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③ 접근방법(comprehensive approach)이다. 이는 통합적 협상으로 특정한 형태의 환경오염을 가져오는 여러 형태의 활동을 동시에 규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협상의 결과를 쉽게 도출할 수 없는 난점이 있다. 대표적 사례가 UN해양법조약(1982) 등이다.

국제환경법을 제정함에 있어 3단계적 방법을 거쳐 결국 ③의 포괄적 접근이 이루어질 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환경법 그리고 이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환경형법, 이의 실시 방법으로서의 국제형사법원의 출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가간에 있어 환경보존을 위해 필요한 침해의 내용 중 중요한 것들은 대충 다음과 같다.

1) 오염의 방지

오염은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환경법의 중심과제인데 해양오염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대기, 유해물질,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 국제하천 및 호소(湖沼)의 오염에 관한 규제까지로 발전하였다.

① 해양오염은 환경에 관한 국제조약의 선구인데 바다는 인류가 공유하기 때문이다. 육상에서 시작된 오염원이 바다를 더럽히게 되지만 선박에 의한 오염, 특히 유조선에 의한 기름유출의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항공기, 선박, 해양구축물로부터도 바다오염의 가능성이 높아 이 분야에 관한 조약도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해저유전개발에 따른 오염방지를 위

한 조약도 체결되어지고 대기에서 야기된 해양오염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대기오염에 관한 조약에서 규제되고 있다.

② 대기오염인데 i) 화석(化石)연료 등의 연소로 인한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산성강화물 피해를 유발하여 각국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간의 분쟁이후 UN 인간환경회의의 중요과제가 되었다. 유럽에서는 산화물에 의한 대기오염이 국경을 넘게 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자 1979년에 장거리 월경대기 오염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최근 언론 등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의 50%는 중국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 등과도 이러한 성격의 조약이 필요하다.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상태에 있다. ii) 위험물질의 운송에대해서는 이미 1870년에 철도운송조약, 1949년에 도로교통조약, 1957년에 유럽 위험물질 도로운송협정 등이 있었다. 이를 기초로 1989년에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을 금지하는 바젤조약 이후 각국간에 유사조약들이 체결되었다. iii)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사업, 예컨대 원자력 관련 사업이나 우주 관련사업과 같은 위험성이 수반되는 사업에는 사고의 경우 손해구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엄격책임을 도입한 조약이 체결되고 있다. iv) 기타 무기, 호소, 하천, 소음에 대한 조약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 기후 유지를 위한 문제

대기권이나 오존층에 있어서의 변화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오랜 세월에 걸쳐 변화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인간에 의해 단기간에 심각하게 변화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동규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i) 오존층 파괴에 대해 주범인 CFCS 등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다가 금지케 하는 조약이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이루어졌다. ii) 최근에는 기후변동에 대해 심각한 논의를 함에 있어 탄산가스나 메탄가스 등과 같이 지구의 온실효과를 높이는 인자에 의해 기후가 변동됨을 파악하고 이러한 가

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3)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자원의 이용

선진국들의 급격한 개발과정에서 일부 동식물들이 멸실되는 경우들이 많아 지구상에 있어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 지구자체의 생명보존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i) 생물의 다양성 확보, 유지를 위한 조약(1992)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ii) 야생동식물의 무역규제(워싱턴조약 1973) 및 열대림의 보호를 위한 국제 열대림 목재협정(1994) 등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체결되었다.

4) 자연지역(습지, 자연유산, 남극) 보존 및 사막화 방지

이를 위한 노력들이 활발하여 각종 조약들이 체결되고 있다.

V. 국제 환경범죄

1. 국제 환경 형법의 의의 및 필요성

20세기를 통해 공해로 인한 지구환경의 악화가 가속화되어 1980년대 이후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구 공통의 문제로 등장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무기 생산을 중심한 중공업 그리고 국제 거래의 활성화로 인한 제조업의 육성으로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공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대기나 해양·토양, 오염에서 시작되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로 신음하게 되었고 이의 결과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들의 속출로 지구의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지구적인 거시적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어느 나라나 간에 경쟁적으로 우선의 경제 논리 입각하여 무제한적 개발을 하다 보니 결국 자신의 뒷에 걸린 셈이 되어 1960년대 이후 UN차원에서 지구환경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노력

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법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파괴사범에 대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대책은 형사적 제재이기 때문에 국제 환경형법의 정립이 논의 되게 되었다. 물론 환경사범의 경우에도 국제사법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겠지만 형의 집행에 있어 구속력 있는 집행방법이 마땅찮아 환경사범은 무역이나 경제적, 외교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실이 이렇다 하더라도 환경사범도 형사범인 것이 틀림이 없으니 형법적인 논리로서 이들에 대응할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일로 국제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진척이 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국제환경 형법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소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2.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국제 형법적 노력

환경오염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절박한 인식이 1980년대 이후 대두되면서 각국은 국내 형법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범죄를 확대해 가는 한편 환경사범도 범죄의 하나임을 주지시켜 나갔다. 환경사범의 범행동기적 고의성은 살인 등과 같은 전통범죄에 비해 미약하지만 그로 인한 결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법정형이 살인, 상해 등 전통적 범죄에 대등한 형편에 있다. 이로서 환경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순수한 행정적 제재와 함께 형법적 제재가 병행되고 있다. 국제 환경범죄의 규제에 있어 국내 형법과 국제법이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 가하는 문제가 중요 과제이다. ① 환경범죄는 전통적인 범죄와는 달리 국경이 없는 것으로 한 사안이 여러 나라의 관할에 속할 경우들이 많은데 이를 위해서도 각국의 형벌권은 국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② 국제법상에 규정된 국제 범죄를 개인이 범한 경우에 대해 이를 국내형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입법을 해야 할 것이지만 국제법상으로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칙을 갖출 필요가 있다. 환경관계 범죄는 국제법적 범죄

일 수가 많은데 국제법에서(국제형법) 이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벌할 방안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국제간의 사건 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형사처벌 포함)을 규정한 국제 형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최근에는 환경 외에도 해상활동의 빈번으로 인한 각국 간의 선박충돌 등 해난사고와 국제성 범죄들이 점점 많아져 가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대응할 국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국제 환경형법은 실질적인 국제형법이 되어야 하는데¹⁵⁾ ① 전 세계적인 초국가적 형법이든지, ② 인접국가간의 국제형법이든지, ③ 국내형법이지만 외국과 관련된 사례를 다루는 형법 적용법으로서의 국제형법 등 3단계로 나누어 점점 초국가적 국제 형법의 제정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로서 장기적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형법적 체도를 갖게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 국내 형법에서 외국관련 국제성 범죄에 대한 장이나 각 범죄마다 외국간의 범죄에 대한 규정을 광범위하게 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장래적으로 지구는 경제적인 문제,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각 국적인 방식보다는 국제간의 협력이 가시화 될 것이다. EU의 경우가 대표적이나 이와 유사한 지역 간의 공동체적 형태가 아프리카나 중남미, 서남,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인접국간에 인위적인 국경이 문제가 아니고 자연적 행태를 공유하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류 삶의 목적이 개인의 편안이라면 국가는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국가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통합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3. 국제 환경범죄를 위한 노력

국제 환경조약에 형벌을 두어 그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1962년 UN기관인 UNESCO가 “경관과 부지(敷地)의 미와 특성

15) 조병선, 국제 환경형법(형사정책연구원 :1996), 19면

의 보호와 관련된 권고안”을 마련하여 최초로 형법적인 처벌을 통한 국제 환경의 보호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1978년에는 자연과 자연자원의 보전을 위한 국제동맹(IUCN) 총회에서 각국의 정부와 정부 간 해양협의 조직체들의 논의를 통해 기름유출로 해양오염을 일으켰을 경우 이를 중벌해야 한다는 규정을 하게 된 이후 국제간 환경사범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의 예들이 크게 증가되었다.¹⁶⁾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환경국제법의 제정, 나아가서는 환경국제형법의 제정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으나 국가간의 이해가 얽혀있어 단일한 법제정은 어렵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접근해 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① 사안별 단편적 접근방법(Piecemeal approach)에서 점차 포괄적 방법으로 나가는 것으로 사안별 단편적 접근방법의 대표적 케이스가 北東大西洋 해양환경보전협약(1992)이다. 이는 대서양 연안국들이 대서양에서의 핵물 폐기의 완전금지, 중독성 물질의 폐기의 억제 등 해양오염의 중대한 요인들을 규제하는 것으로 내용별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사안들을 각국의 협의로 점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② 原則(雨率)협약 - 추후의 정서 접근방식(frame work convention/protocol approach)인데 이는 국가 간 협약에서는 원칙적인 문제만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 추가적인 사안들은 의정서를 통해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軟性法의 성격인데 가장 선호되고 있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각국 간에 환경의 특수분야에 관해 원칙적인 합의는 되어진 상태에서 과학정보의 입수나 정치적 조건의 변화와 같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의정서를 통해 보완해 감으로서 새로운 조약을 위한 비준 없이도 의정서나 부속서의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분야에 있어 각국은 탄력성을 가진 유연한 형태의 우산협약이 국가 간의 협력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어 대부분의 국제협약이 이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軟性法은 구속력 없

16) 96년 현재까지만 해도 국제 환경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체결된 크고 작은 조약은 거의 900개나 된다.

는 규범에 불과해서 각국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을 때는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③포괄적 접근방법(comprehensive approach)이다. 이는 통합적 협상으로 특정한 형태의 환경오염을 가져오는 여러 형태의 활동을 동시에 규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협상의 결과를 쉽게 도출할 수 없는 난점이 있다. 대표적 사례가 UN해양법조약(1982)등이다. 국제 환경법을 제정함에 있어 3단계적 방법을 거쳐 결국 ③의 포괄적 접근이 이루어질 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환경법 그리고 이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환경형법, 이의 실시 방법으로서의 국제형사 법원이 출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가 간 환경보존을 위해 필요한 침해의 내용 중 중요한 것들은 대충 다음과 같다.

1) 汚染의 방지

오염은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환경형법의 중심과제인데 국제간에는 해양오염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대기, 유해물질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 국제하천 및 호소(湖沼)의 오염에 관한 규제도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해양오염은 환경에 관한 국제조약의 선구인데 바다는 인류가 공유하기 때문이다. 육상에서 시작된 오염원이 바다를 더럽힐 뿐 아니라 선박에 의한 오염 특히 유조선에 의한 기름유출이 매년 적지 않게 발생 되고 있다. 항공기, 선박, 해양 구축물로부터도 바다오염의 가능성이 높아 이 분야의 조약도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해저 유전개발에 따른 오염방지를 위한 조약도 체결되어지고 대기에서 야기된 해양오염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대기오염에 관한 조약에서 규제되고 있다.

② 대기오염인데 i) 化石연료등의 연소로 인한 유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산성강하물 피해를 유발하여 각국의 위협이 되고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 간의 분쟁이후 UN 인간환경회의의 중요과제가 되었다. 유럽에서는 산화물에 의한 대기오염이 국경을 넘는 이동 현상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자 1979년에 장거리 월경대기 오염조약을 체결하였다. 어떤 보고에 의

하면¹⁷⁾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의 50%는 중국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 등과도 이러한 성격의 조약이 필요하다.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하다. ii) 위험물질의 운송에 대해서는 이미 1870년에 철도운송조약, 1949년에 도로교통조약, 1957년에 유럽 위험물질 도로운송협정 등이 있었다. 이를 기초로 1989년에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을 금지하는 바젤조약 이후 각국 간에 유사조약들이 체결되었다. iii)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사업, 예컨대 원자력 관련 사업이나 우주관련 사업과 같은 위험성이 수반되는 사업에는 사고의 경우 손해구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엄격책임을 도입한 조약이 체결되고 있다.¹⁸⁾ iv) 기타 무기, 湖沼, 河川, 소음에 대한 조약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기후 유지를 위한 문제

대기권이나 오존층에 있어서의 변화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변화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인간에 의해 단기간에 심각하게 변화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동규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i) 오존층 파괴에 대해 주범인 CFCS 등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다가 금지케 하는 조약이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이루어졌다. ii) 기후변동이 최근 심

17) 부산일보 2004년 8월 10일자 29면에서는 서울대 지구 환경과학부의 박순용 교수의 한국 생태계의 장거리 이동 및 국내 배출 오염물질의 산성 성분 부하량이라는 논문에서 이산화황(SO₂), 질소 산화물(NO₂) 등 한반도 대기오염물질의 최고 49%가 서해를 건너 날아 왔다고 하였다. 한국의 대기 오염물질 중 중국에서 발생된 오염 물질의 비중은 아황산의 경우 년 평균 40%, 질소 산화물은 49%라고 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생태계의 42%를 아산화황으로 인한 것인데 피해의 1/3은 국내 오염물질, 2/3는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하였다. 국립 환경연구원은 96년 조사에서 아황산가스의 23%, 질소산화물의 20%가 중국에서 왔다고 하여 이번 연구와 차이가 있다.

18) 원자력 손해 책임에 대해서는 1960년 파리 조약이후 계속적 보완, 확대 작업이 이루어졌고 우주활동사고에 대해서는 1967년 우주 전체협약이후 손해 책임조약(1972)이 체결되었는데 우주활동의 영역국에 대한 무과실 책임이 도입되었다.

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탄산가스나 메탄가스 등과 같이 지구의 온실효과를 갖는 인자에 의해 기후가 변동됨을 파악하고 이러한 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3)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자원의 이용

선진국들의 급격한 개발과정에서 일부 동식물들의 멸실되는 경우들이 많아¹⁹⁾ 지구상에 있어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 지구자체의 생명 보존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i) 생물의 다양성 확보, 유지를 위한 조약(1992)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ii) 야생동식물의 무역규제(워싱턴조약 1973) 및 열대림의 보호를 위한 국제 열대림 목재협정(1994)등의 체결이다.

4) 자연지역(습지, 자연유산, 남극) 보존 및 사막화 방지

이를 위한 노력들이 활발하여 각종 조약들이 체결되고 있다.

4. 국제 환경형법의 특징(모델)

환경문제와 관련된 국제조약들은 대부분이 형법적 제재수단을 내포하고 있는데 환경형법의 내용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한다.²⁰⁾

- ① 특정행위를 국제법상 범죄로 한다는 명백한 또는 묵시적인 선언
- ② 특정행위의 국내법에서의 범죄화
- ③ 범죄혐의자의 형사소추 또는 범죄인 인도
- ④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처벌

19) 96년 현재 지구상에서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해 매일 100여종이 멸종되고 있다고 한다.

20) Bassiouni, Penal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15 case W.Res, Jint'IL27(1983) wt30

- ⑤ 국제조약의 집행을 위한 여러 형태의 사법공조를 통한 상호협력
- ⑥ 형사관할에 관한 는 거중에서 우선권의 순서의 확립 및 보편적 관할 권의 적용의 승인
- ⑦ 국제형사법원의 언급
- ⑧ 상관의 명령에 근거한 방어의 배제 등이다. 국제조약에 있어 형법적 조항이 규정 되는 형식은 대체로 7가지 유형이 있다.²¹⁾

①벌칙형태의 일반적 유형 : 제--조를 적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를 위반한 행위는 처벌한다 라는 유형이다.[1972 오슬로협약, 런던협약(72),워싱턴협약(73)]

② 국제적인 입법조치를 요구하는 유형 : 조약당사국에게 제--조와 그에 대한 처벌을 입법화하고 집행한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형태이다.

③ 선박등록 국가의 연해법에 따라 처벌을 요구하는 유형 : 특정행위를 선박이 등록 된 국가의 연해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는 유형이다.

④ 포괄적인 집행조치를 요구 : 협약을 유효화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기타 조치를 입법으로 제정하고 집행한다 라고 하여 협약의 구체적인 조문을 언급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유효한 집행조치를 입법화 할 것을 주문하는 형식(북태평양 바다표범의 모피를 보존하기 위한 임시협약)

⑤ 형법의 예방효과를 고려한 유형 : 이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계약국은 범죄의 강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특별법규를 제정한다고 하여 형벌의 위협효과나 예방효과를 기대한 유형이다.

⑥ 즉시 조치가 가능한 정책적 처벌조항을 두는 유형 : 현장에서의 수색, 검사, 승선, 체포 등의 즉석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책적 형벌조항 (policing provisions)과 같은 유형이다.

21) 조병선, 53-54면

⑦ 자치적 정책적 형벌조항 : 먼저 위반행위에 대해 스스로 통보의 의무를 두고 그 의무를 지키기 않을 때 처벌하는 자발적 정책적 처벌조항 (self-policing provision)과 같은 유형들이 있다.

⑧ 위의 7가지를 합한 유형(UN해양법 협약 82)

결국 통일 단일한 국제형법의 제정과 이를 실시하기 위한 국제형사법의 설립과 국제형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내 형법에 있어 체약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처벌조항을 두든지 그게 어렵다면 특별환경형법을 제정하여 위반행위를 국내법원에서 재판하여 처리한 뒤 그 내용을 체약국에 통고하든지 하지는 것이다.

조약체결에 가담한 국가에게 이와 같은 의무를 조약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관계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사항을 국내법원에서 재판하여 처우한 뒤 이의결과를 체약국에 통보함으로써 조약의 내용을 성실히 지켰는지 여부를 서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VI. 결 론

환경법은 지구의 환경을 양호한 상태로 보전 및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반환경적 행위들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환경 침해적 행위를 규제함에는 형법적 대응이 가장 실효적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환경 침해는 자본주의적 생산형태가 빚은 역효과로서 산업의 발전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소간의 환경침해는 불가피한 것으로 수인내지 인용해야 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물질문명의 개선이나 발전은 인류적 숙원이자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환경이 침

해 된다고 해서 발전적 행위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 있어 개발과정에 늘상 문제 되는 것이 환경침해적인 것이다. 금년 초 호주에서는 대규모 지하자원 개발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하는데 이를 개발할 경우 경제적 이익이 큰 것을 알면서도 일시적 부를 안겨주는 자원개발 보다는 자손만대에 양질의, 파괴되지 않는 자연을 물려주는 것이 장기적 안목에서는 이익이 된다고 보아 현실적 국익을 포기하고 환경 보존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이 된다. 고도선진사회에서는 더 이상 산업 개발적 필요성이 적기 때문인지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래적인 환경보존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환경보다는 개발이 우선되는 입장에서 개발과정에 논의되는 환경적 문제는 극히 의례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통과적인 형식적 절차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경주 부산간 고속철도 통과 지점인 양산의 천성산 지하터널 문제가 환경침해적인 것으로 지적되어 민간 환경단체와 2년여에 걸친 대결국면도 결국 개발 우선의 논리가 국민적 여론이었다고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주변의 도처에 환경 침해적 시비가 도사리고 있는데 환경 문제를 배부른 소리정도로 일소에 부쳐서도 안되겠지만 침해정도와 이로 인해 얻는 이익과를 교량 하여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인데 부질없는 감정 대립적 소모권으로 실기를 놓치므로서 과도한 불이익을 부담하는 일은 지체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지역에는 지금도 광안대교를 거쳐 감만동서 영도 청학동의 바다위에 설치되는 북항대교 그리고 이와 연정선상에서의 명지대교 건설 과정에도 환경 등의 문제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에 의한 환경침해 행위뿐 아니라 생활오수, 대규모 가축사육으로 인한 폐수처리 등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 환경침해는 관계단행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기는 하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환경침해시범을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별법으로 규제 하는데는 여러

문제가 있어 형법적 규정으로 단일화하던지 아니면 형범부수법 형태로 환경규제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은 이미 말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다.

이 논문은 환경법의 성격을 규명 하는게 아니라 환경침해를 합리적이 고도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환경 형법적 대응을 주장 한 것으로 정책 당국에 의한 입법의 실현이 시급한 실정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박윤직 물권법 [박영사 : 1993]
-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 1998]
- 김병길, 천병태 환경법론 [삼영사 : 1997]
- 김창규 환경법상 협동원칙에 대한 소고 [배준상 교수 정년논문집 : 1997]
- 조병선 국제환경형법 [형사정책연구원 : 1996]
- 조은래 환경법
- 최상호 환경권
- Bassiouni, Penal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15 case W. Res, Jint' IL27(1983) wt30